

#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처리지침 개정 예정 사항 안내

< '25. 9. 16.(화)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국 기업지원부>

페이지	기존 지침내용(2023.01~)	개정 내용(2026. 1. 예정)
82p	<p>(4) 훈련방법별 수료요건 (생략)</p> <p>○ 인터넷원격훈련 및 스마트훈련 (생략)</p> <p>-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(1일 학습시간은 8시간 초과 불가)</p> <p>※ <u>매 차시별로 최소 학습시간(해당 차시의 50%)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 차시 진도율에 반영</u></p> <p>☞ (사례) 1차시가 25분인 경우, 학습 재생시간이 13분을 지나야 해당 차시 진도율이 50%부터 반영되고, 13분을 지나기 전에는 진도율은 0%</p>	<p>(4) 훈련방법별 수료요건 (생략)</p> <p>○ 인터넷원격훈련 및 스마트훈련 (생략)</p> <p>-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(1일 학습시간은 8시간 초과 불가)</p> <p>- (차시별 학습시간 인정기준) 차시별로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한정하여 <u>해당 차시 실제 학습시간을 인정</u></p> <p>☞ (사례) 1차시가 30분인 과정의 경우, 실제 학습 시간이 15분이면, 학습 시간 15분 인정</p> <p>※ <u>배속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도 실제 학습한 시간만 인정함</u></p> <p>※ 실제 학습시간은 각 차시별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을 초과하여 인정될 수 없음</p> <p>- (최종진도율 산정 기준) 진도율은 <u>【전체 학습시간÷전체 소정훈련시간 ×100】</u>으로 계산하며, 소수점 발생시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함</p> <p>※ <u>전체 학습시간</u> : 차시별 학습시간 인정기준을 충족한 전체 차시의 실제 학습시간의 총합</p> <p>※ <u>실제 학습시간</u> : 훈련생이 콘텐츠 학습에 참여한 실제 소요시간</p> <p>※ <u>전체 소정훈련시간</u> :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각 차시별 학습시간의 총합</p>